

## 자동차강제경매신청

채 권 자 OO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(우편번호)

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등록워부상의 주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청구채권의 표시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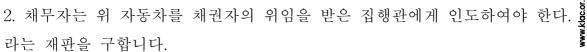
### 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

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### 신 청 취 지

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 한다.





### 신 청 원 인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에서 20○○. ○. ○. 선고한 20○○가 단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위 청구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위 청구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강제집행 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# 첨 부 서 류

| 1.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     | 1통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. 판결정본송달증명원         | 1통   |
| 1. 자동차등록원부등본         | 1통   |
| 1. 자동차목록             | 40통  |
| 1. 등록세영수필확인서, 영수필통지서 | 각 1통 |
| 1. 집행비용예납서           | 1통   |
| 1. 송달료납부서            | 1통   |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# ○○지방법위 귀중



#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

1. 자동차등록번호 ○○12가1234

1. 차 명 크레도스

1. 최 초 등 록 일 1999 -01 - 01

1. 년 식 1999

1. 원 동 기 형 식 T8

1. 형식 승인 번호 1-0462-004-003

1.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

1. 사 용 본 거 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1. 소 유 자 ◇◇◇. 끝.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r Kr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<b>함</b>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(사용본거지주의, 민/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규칙 제109조제1항 본문).  |  |  |
| 기케비이                         | ・민사집행규칙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  |  |  |
| 집행법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(민사집행규칙 제109조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 단서),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(소재지주의,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2항).   |  |  |
| 3 - 11 2                     | 민사집행법 제187조, 민사집행  |  |  |
| 제출부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서 1부   관련 법 규   근 1 0 1 1 129조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청인)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규칙 제108조, 민사집 행법 제83조제5항)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불복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및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| (이해관계인)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(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4항).<br>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인지액 : 5,000원(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  |  |  |
|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송달료: (이해관계인수+3)× 000원(1회송달료) ×10회분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등록면허세:등록면허세 15,000원(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3호)   |  |  |
| •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   |  |  |
|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. 다만,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요가 없음.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,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.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 절차는 취소됨(민사집행규칙 제116조). 다만, 압류의 효력이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민사집행규칙 제112조).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민사집행규칙 제116조).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